청렴연수원 공고 제2025-01호

청렴연수원 공무직근로자 채용 공고
(일반경비 · 환경미화)

청렴연수원에서 근무할 공무직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.

2025년 10월 30일
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장

---

1 채용 개요

○ 채용분야 및 인원

채용분야 (인원)	근무예정부서 (소재지)	신분 (계약기간)	담당 업무
일반경비 1명	청렴연수원 교육지원과 (충청북도 청주시)	공무직근로자 (무기계약)	· 도난방지 및 기타 불법행위의 감시 및 예방 · 출입자 관리 및 방문객 안내 업무 · 일반 경비 및 순찰 업무 · 기타 기관장이 지시하는 업무
환경미화(외부) 1명	청렴연수원 교육지원과 (충청북도 청주시)	공무직근로자 (무기계약)	• 청사 외곽 청소 • 청사 위생관리 및 폐기물 처리 • 조경 잡초 제거 등 • 내·외부 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 • 기타 기관장이 지시하는 업무

○ **(채용직위)** 1급 직무(사원급)

○ **(연봉월액)** 2,296,880원

※ 연봉월액 = 기본급 + 정액급식비

※ 초과근무수당, 명절상여금 등 각종 수당 별도 지급

○ **(근로시간)**

- (일반경비) 주야간 교대근무(주말, 공휴일 근무 포함)
- (환경미화) 주 5일, 1일 8시간 근무

○ **(후생복지)** 4대보험(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, 국민연금) 가입

○ **(기타) 근무 시작일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**으로,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 태도의 불량 등으로 **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**되는 경우 **근로계약을 해지**할 수 있음

2 기본 응시요건

□ 공통 자격

○ **(연령)**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자로 공무직 정년(만 60세) 미만인 자

○ **(병역)** 남자의 경우 병역을 마친 자 또는 병역이 면제된 자

○ **(결격사유)** 「국가공무원법」제33조 각호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에 규정된 취업제한 사유가 없는 자

< 결격사유 관련 규정 >

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(결격사유)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
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
□ 일반경비 자격

○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**'일반경비원 신임교육'**을 이수한 자

※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는 원서접수 종료일(2025. 11. 11.)분까지 인정

3 가점 및 우대사항

□ 가점

항목	관련 법령	부가 점수
법정 가점	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9조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「보훈보호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5조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4조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	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 단계 별 만점의 5~10% (본 채용은 법정 가점 미적용)
사회 형평 가점	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	서류전형 만점의 3%
	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	
	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제2조에 해당하는 자	
	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호대상자	

※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,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(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)

※ 채용예정인원인 3명 이하인 경우 법정가점(취업보호대상자) 미적용하며, 4명 이상인 경우에도 법정가점을 적용하여 합격하는 인원은 채용예정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음

※ 면접전형은 점수로 환산할 수 없으므로, 법정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

□ 우대사항(고령자 우대)

구분	우대사항(가점)
준고령자(만 50세 이상 만 55세 미만) 및 고령자(만 55세 이상)	5

○ 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준고령자, 고령자에 대하여 서류전형 우대점수 부여(연령은 채용 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)

※ 출생일이 1975. 11. 1. 이전이며, 연령이 공무직 정년(만 60세) 미만인 사람

4 채용절차 및 일정

채용공고	⇒	원서접수	⇒	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⇒	면접전형	⇒	최종 합격자 발표
'25.10.31.(금)~ '25.11.11.(화)		'25.10.31.(금)~ '25.11.11.(화)		'25.11.21.(금)		'25.12.9.(화)		'25.12.16.(화)

□ 서류전형

○ **(심사항목)** 응시자 제출서류(이력서, 자기소개서)를 통해 적격성 등 심사(100점 만점)

심사항목		심사점수(점)
분야	평정요소	
일반	**자기소개서** - 소통·화합 능력 - 추진력, 업무성취 경험 - 성실성·책임감 등	45
	직무수행계획서 - 청렴연수원에 대한 이해 - 업무 이해도 - 업무처리 및 문제해결 능력 등	50
우대	**연령(준고령자·고령자)**	5
가점	**사회형평**	3
소계		100 + 가점(3)

○ **(감점사항)** 학력, 출신지 등을 기재하여 블라인드 채용을 위반하거나 관련 양식을 미준수하여 채용서류를 제출한 경우 감점

○ **(합격자 결정)** 시험위원의 평가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 순으로 결정

○ **(합격자 배수)**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4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채점 기준에 따라 채용예정 인원의 4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(동점자 모두 합격 결정)

※ 응시인원이 20명 이내 : 4배수, 21명에서 40명 이내 : 5배수, 40명 초과 : 6배수 선발

○ **(동점자 처리)** 서류전형결과 동점자는 전원 합격(면접심사 대상)

□ 면접전형

○ **(심사항목)** 총 5개 심사항목에 대해 상-중-하로 심사

심사항목	심사방법
가. 공무직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	상-중-하
나. 전문지식과 응용능력	상-중-하
다.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	상-중-하
라. 예의 품행 및 성실성	상-중-하
마.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	상-중-하

○ **(합격자 결정)** 평정요소별 상 · 중 · 하로 평정하여 '상'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

※ '상'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'중'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

※ 위원 모두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요소 이상을 '하'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 모두가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'하'로 평정한 경우는 불합격 처리

○ **(동점자 처리)** 취업지원대상자 >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 > 서류전형 성적 순으로 결정

※ 상기 기준으로도 합격자 결정이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·의결을 통하여 결정

□ 예비합격자 결정

○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및 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임용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하여 평정 성적 고득점자 순으로 예비합격자 결정

- **일반경비 2명, 환경미화(외부) 2명** 각 분야 성적순 예비합격

※ 예비합격자의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후 6개월로 한정

※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등 발생시 예비합격자의 성적순으로 임용 기회 부여

□ 채용일정

구분	일정	비고
채용공고	'25. 10. 31.(금) ~ '25. 11. 11.(화)	국민권익위원회·청렴연수원 누리집, 나라일터 등 공고
원서접수	'25. 10. 31.(금) 09:00 ~ '25. 11. 11.(화) 18:00	E-mail 및 등기우편 접수
서류전형	'25. 11. 20.(목) 예정	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	'25. 11. 21.(금)	국민권익위원회·청렴연수원 누리집, 나라일터 등 공고 (합격자에 대하여 개별통보)
면접전형	'25. 12. 9.(화) 예정	
최종합격자 발표일	'25. 12. 16.(화)	국민권익위원회·청렴연수원 누리집, 나라일터 등 공고 (합격자에 대하여 개별통보)
채용 예정일	**'26. 1. 2.(금)**	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무 개시

※ 채용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(변경된 일정은 국민권익위원회, 청렴연수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공지 예정)

※ 최종합격자는 최종합격자 공고의 근로계약체결예정일로부터 최대 2주의 채용유예를 요청할 수 있음

5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

□ 원서 접수 기간 : ’25. 10. 31.(금) 09:00 ~ ’25. 11. 11.(화) 18:00

○ 원서 접수 방법 : 등기우편 및 전자우편(이메일) 접수

제출 방법	접수처	유의사항
온라인	담당자 이메일(asdf7979@korea.kr)	**접수 마감일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(소인분 불인정)**
등기우편	(우28678)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357,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교육지원과 공무직 채용담당자 앞	

※ 원활한 채용 절차 진행을 위하여 **방문 접수는 받지 않음**

※ 온라인 및 등기우편 접수 모두 마감일 18:00까지 도착한 서류만 유효(소인분 불인정)

※ 응시원서는 1회만 제출할 수 있으며 분할/중복접수 불가

□ 응시자 제출서류

<table>
<tr><th>제출시기</th><th>제출서류</th></tr>
<tr><td>원서접수 시</td><td>- ① 이력서[붙임1], ② 자기소개서[붙임2], ③ 직무수행계획서[붙임3], ④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[붙임4], ⑤ 취업제한 체크리스트[붙임5]</td></tr>
<tr><td>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
~
면접전형 당일</td><td>
<table>
<tr><th>제출대상</th><th>제출서류</th></tr>
<tr><td>합격자 전원</td><td>⑥ (공통)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중 택1) 사본 1부
⑦ (일반경비)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자 제출 불요)
⑧ (일반경비) 채용 신체검사서(국가건강검진 결과 또는 채용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로 대체 가능)</td></tr>
<tr><td>가점 대상자</td><td>⑨ 법정가점(취업지원 가점) 대상자 :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
⑩ 사회형평 가점 대상자
- 저소득층 :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
- 한부모가족 :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
- 북한이탈주민 :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
- 다문화가족 : 다음의 증빙서류 각 1부
· 가족관계증명서
·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
· 부모 또는 배우자(귀화 허가를 받은 자) 명의의 기본증명서 (혼인한 외국인의 전 국적 표시)
·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(결혼이민자)</td></tr>
</table>
</td></tr>
</table>

[★ 제출 방법별 서류제출 주의사항(필독) ★]

1. 원서접수 시

(공통)

가. 제출 서류 중 ①,②,③,④,⑤번 서류의 경우, **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 제출**

※ 공고 상 붙임의 양식이 아닌 별도 양식 등으로 제출하는 것은 서류전형의 감점요소임

(온라인)

가. 원서접수 시 서명한 파일(①~⑤) 전체를 순서에 맞게 준비한 후 전체 파일을 스캔하여 하나의 PDF파일로 제출하여야하며, 메일 제목 및 제출서류 제목은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함

- 청렴연수원 공무직근로자(일반경비·환경미화 외부*) 지원서류 제출(지원자 성명)

* 반드시 본인이 지원하는 분야명 기재

ex. 청렴연수원 공무직근로자(일반경비) 지원서류 제출(홍길동)
청렴연수원 공무직근로자(환경미화 외부) 지원서류 제출(홍길동)

(등기우편)

가. 서명한 파일(①~⑤) 전체를 순서에 맞게 준비한 후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, **접수마감일 18:00까지 '도착'한 서류만 유효(소인분 불인정)**

나. 우편 도착 여부를 제출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

2.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이후

가. 본인 확인을 위하여 ⑥를 반드시 제출(신분증 원본 제출 금지)

나. **이력서에 작성한 사항 중 제출서류에 의해 증빙할 수 없는 경우 합격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**

다. 모든 증빙서류는 응시마감일 기준 **6개월 이내**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

※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 시 반드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에서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등 지원기간이 명시된 서류를 발급받아 함께 제출

3. 최종합격자 발표 후

가. 임용후보자 등록원서, 공정채용확인서,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등 제출서류 합격자 발표 후 별도 안내 예정

6 유의사항

□ 채용서류 반환 관련

○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에 별지의 "채용서류 반환청구서"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

※ 다만, 채용절차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

○ 응시자가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한 경우에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하여야 함

※ 온라인 제출의 경우 담당자 이메일(asdf7979@korea.kr)로 제출

○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청구기한 이후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파기

※ 단, 인사감사 등 채용 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자의 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연락처, 전자우편주소에 관한 정보는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보관

□ 채용비리 관련

○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·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

○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(공정채용 확인서)를 제출

□ 기타 유의사항

○ 입사지원서,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·간접적으로 학교명, 출생지, 부모직업, 가족관계,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(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)

○ 입사지원서 기재 누락, 연락 불능, 합격자발표 미확인,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(전형 응시 불가)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,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

○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 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,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시험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

○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(휴대전화, 이메일 등), 생년월일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시험위원에게 제공됨

○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거나 연수원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조회, 신체검사 결과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

○ **입사지원 서류는 접수 마감기한['25. 11. 11.(화) 18시]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**

○ 본 채용 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

○ 기타 관련 문의 사항은 청렴연수원 교육지원과(☎043-901-6114)에 문의

◈ 붙임: 1. 이력서(서식) 1부.
2. 자기소개서(서식) 1부.
3. 직무수행계획서(서식) 1부 .
4.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(서식) 1부.
5. 취업제한 체크리스트(서식) 1부.

[붙임1] 이력서

이 력 서

가. 공통사항			
응시 분야	☐ 공무직[일반경비] ☐ 공무직[환경미화(외부)]	접수번호	<미기재>
성명		생일	< 심사위원에게 미제공> (당사자 확인용으로만 활용) *** 생년은 미기재**
연락처	자 택 : 휴대폰:	주소	< 심사위원에게 미제공> (당사자 확인용으로만 활용)
자격 여부	☐ (필수) 공무직 정년(60세) 미만 , ☐ 준고령자(50세 이상) 및 고령자(55세 이상) ☐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, 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자		
가점 여부	☐ 취업지원 대상자, ☐ 장애인, ☐ 저소득층, ☐ 북한이탈주민, ☐ 다문화가족, ☐ 해당사항 없음		

나. 경력 ※ 직무관련 경력 중 경력증명서 등으로 증빙이 가능한 경력만 기재

근무기관	근무기간 (연월일~연월일)	직급/직위	담당업무	근무 형태
(예시)청렴연수원	*201701.01.~ 2018.12.31.*	*기간제근로자*	*일반경비 업무*	*전일*

다. 병역 ※ 남성의 경우 반드시 기재

군 별	계급	복무기간	미필여부

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25 년 월 일

성 명 : (서명)

※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증빙불가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음)

※ **위 작성 예시에 기재된 사항을 지우고 본인의 이력을 작성**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칸이 부족할 경우 '줄/칸 추가하기' 등을 통해 추가 입력하시기 바랍니다.

[붙임2] 자기소개서

자 기 소 개 서

(모든 응시자는 반드시 작성)

응시 분야	□ 공무직근로자[일반경비], □ 공무직근로자[환경미화(외부)]
성명	

위에 기재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25. . . 작 성 자 : (날인 또는 서명)

※ 지원동기, 생활신조와 가치관, 미래 전망, 성품, 직장 구성원으로 바람직한 태도, 대인관계, 취미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

(작성 시 학교명, 출생지,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·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)

※ **휴먼명조 13p 가는글씨**, **줄간격 160%, 자간 0%**로 작성(A4용지 2**매 이내**로 작성)

[붙임3] 직무수행계획서

직 무 수 행 계 획 서

(모든 응시자는 반드시 작성)

응시 분야	☐ 공무직근로자[일반경비], ☐ 공무직근로자[환경미화(외부)]
성명	

위에 기재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25. . . 작 성 자 : (날인 또는 서명)

※ 시험공고에 명시된 직무분야의 담당예정업무와 연계하여 작성(본인이 채용 예정 직위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이유, 해당분야에 대한 이해도, 채용예정 분야에서 어떠한 일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계획 등)
(작성 시 학교명, 출생지,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·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)

※ **휴먼명조 13p 가는글씨, 줄간격 160%, 자간 0%**로 작성(A4용지 3**매 이내**로 작성)

[붙임4]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

개인정보 제공 동의서

본인은 청렴연수원에서 시행하는 채용시험 응시자로서, 채용을 위한 경력, 자격, 학력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검증을 위한 개인정보의 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. 또한, 본인이 서명 . 날인한 동의서 사본은 자료의 진위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.

2025년 월 일

성 명 :

생년월일 : . . .

서 명 :

[붙임5] 취업제한 체크리스트

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(확인서)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상 **비위면직자등**은 **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**되어(제82조)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**형사처벌**(제89조,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) 및 **해임요구**(제83조)를 받게 되므로, 채용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
<해당되는 문항 □에 체크>

1. **공직자**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*공직자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「국가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·임용·교육훈련·복무·보수·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,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	해당 □ 비해당 □
2. **'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'**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(다만, 적발 시기는 재직 중, 퇴직 후 불문) * 부패행위 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.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.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·관리·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.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 * (예시) 성희롱, 성매매, 음주운전, 폭행, 단순업무상 과실, 복무위반, 불성실: 비해당 금품요구, 편의수수, 공금횡령, 공용물 사적사용, 수당·여비 부당수령: 해당	해당 □ 비해당 □
3-1. **해당 부패행위**로 **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**된 사실이 있는지	해당 □ 비해당 □
3-2. 위 **퇴직일**(당연퇴직 · 파면 · 해임일)로부터 **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** 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)	해당 □ 비해당 □
4-1. 해당 부패행위로 **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**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	해당 □ 비해당 □
4-2. 그 형의 **집행이 종료된 날**(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)부터 **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**(5년 내)	해당 □ 비해당 □
4-3. 권익위법('16.3.29. 제14145호로) 시행('16.9.30.)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, 부칙 제2조)	해당 □ 비해당 □
1, 2, 3-1, 3-2 (모두 충족) ⇒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 제1항 제1호)	해당 □
1, 2, 4-1, 4-2, 4-3 (모두 충족) ⇒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 제1항 제2호)	해당 □

※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.

20 년 월 일

생년월일 . . . 지 원 자 (서명)

년 월 일